

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 [2024]

▷ 계약목적

- 1. 이용계약을 통해 기관과 서비스제공자, 이용 대상자와 보호자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고 준수하며 이용 대상자에게 보다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.
- 2.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낮 동안 제공하는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존능력을 유지·증진시켜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.

▷ 계약기간

- 1.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하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제2조 1항에 명시토록 한다.
- 2. 장기요양 등급자(1~5등급, 인지지원등급)의 경우, 당사자 간의 이견이 없는 한 계약기간은 급여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.
- 3. 갱신 시의 계약기간은 갱신한 장기요양 인정 유효 시작일로부터, 인정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.
- 4. 기관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(또는 보호자)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이용자(또는 보호자)는 이후 15일 이내에 그 여부를 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▷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

- 1. 기관에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이용료의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고시하는 수가 산정지침에 따른 법정 본인 일부 부담금을 그대로 반영하므로 매년 상승률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.
- 2.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(본인일부부담금)에 의거하여 주·야간보호서비스 이용자는 통상적으로 요양보험수가의 100분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경감대상자는 100분의 60, 또는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. 단, 비급여 항목(식비 및 간식비)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비용(외래진료비, 약제비 등)은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(보호자)가 전액 부담하도록 한다.
- 3. 비급여 항목과 비용은 아래와 같다.

식사비 1일/2회 (점심, 저녁)	간식비 1일/2회 (오전, 오후)	1일당 식사+간식비용
2,500 * 2 = 5,000원	500 * 2 = 1,000원	6,000원

- 4.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(보호자)가 전액 부담하도록 한다.
- 5.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은 아래와 같다.

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등급
월 한도액	2,069,900	1,869,600	1,455,800	1,341,800	1,151,600	643,700
20% 증액	2,483,880	2,243,520	1,746,960	1,610,160	1,381,920	

6. 본인부담율에 따른 1일당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다.

6 시 간 이 상 ~ 8 시 간 미 만			
본인부담율	일반 (15%)	경감 (9%)	경감 (6%)
2등급	7,410	4,440	2,960
3등급	6,840	4,100	2,730
4등급	6,610	3,960	2,640
5등급	6,370	3,820	2,550
인지지원등급	6,370	3,820	2,550
8 시 간 이 상 ~ 10 시 간 미 만			
본인부담율	일반 (15%)	경감 (9%)	경감 (6%)
2등급	9,220	5,530	3,680
3등급	8,510	5,100	3,400
4등급	8,280	4,960	3,310
5등급	8,040	4,820	3,210
인지지원등급	8,040	4,820	3,210
10 시 간 이 상 ~ 13 시 간 미 만			
본인부담율	일반 (15%)	경감 (9%)	경감 (6%)
2등급	10,150	6,090	4,060
3등급	9,380	5,630	3,750
4등급	9,150	5,490	3,660
5등급	8,910	5,350	3,560
인지지원등급	8,040	4,820	3,210

- 18시~22시에 이용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, 급여비용의 20%가 가산되며, 일요일,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, 급여비용의 30%가 가산됨에 따라 같은 일수를 이용하더라도 매월 본인부담금이 다를 수 있다.
-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기관은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평일(월~금)에 한하여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50%를 공단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미입소 비용은 소정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.
-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(본인부담금+비급여비용)를 정산하여 그 내용을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(보호자)에게 말일 ~ 다음 달 5일 이내에 SMS와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로 통보한다.
-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(보호자)은 매월 이용료를 지정된 기관의 계좌로 말일 ~ 익월 10일 중으로 납부한다. 다만,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까지로 한다.

▷ 신원인수인(보호자)의 권리

1.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 또는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2.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장기요양급여 종결 또는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
3. 이용자의 활동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4. 이용자의 활동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
5. 이용자에 대한 건강, 식사, 생활 상담,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6. 이용자가 청결한 환경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7. 보호자회의 등에 참석하여 기관 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 정보를 공유받고 건의 사항 등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
8. 이용자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
9. 장기요양 급여비용 명세서, 장기요양급여 종결 시 연계 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▷ 신원인수인(보호자)의 의무

1. 이용자의 건강 상태, 병력, 인정서 등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
2.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급여비용 부담 의무
3. 주소지, 연락처 등 인적 사항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
4. 장기요양급여 종류 변경, 등급변경, 인정 기간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
5.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
6. 이용자의 책무로 인해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, 집기 등의 오손, 파손,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

▷ 계약의 해제

1.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(보호자)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,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-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
 - ② 기관이 주·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 - ③ 주·야간보호급여 제공 시간을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(보호자)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(보호자)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통보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하루 전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2. 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,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(보호자)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- ① 이용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
 - ②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판정받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
 - ③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, 법정 감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서 전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
 - ④ 이용자의 심각한 성격·정서적 문제나 건강상 이유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때
 -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
 - ⑥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이용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
 - ⑦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(보호자)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3개월 이상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